

#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동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19 - 98
----------	---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11. .

발의자 : 최동철, 이충숙, 송순효, 이충현  
김성한, 송영섭, 신낙형, 이종숙  
윤유선

## 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결산 승인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예산안 등의 원활한 심의·의결을 위하여 정례회의 집회일을 조정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11일에서 6월 8일로 변경(제4조제1호)

나.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11일에서 11월 15일로 변경(제4조제2호)

다. 부칙에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로 규정

## 4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나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관련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44조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54조

라. 입법예고(2019. 11. 22. ~ 2019. 11. 27)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호 본문 중 “6월 11일”을 “6월 8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11월 11일”을 “11월 15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## 【관 련 법 규】

### □ 지방자치법

**제44조(정례회)**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.

② 정례회의 집회일,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# 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**제54조(정례회의 집회일 등)**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·6월 중에, 제2차 정례회는 11월·12월 중에 열어야 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·10월 중에 열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

2.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

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,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